

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

제1조(목적) 이 영은 「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선박운항자에 대한 교육·훈련) ① 「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5조제2항에 따른 교육·훈련의 내용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야 한다.

1. 선박이 항해하는 선박교통관제구역에서의 선박교통관제 세부 절차
2. 선박이 항해하는 선박교통관제구역을 관할하는 선박교통관제관서의 호출명칭, 주파수 등 통신방법
3. 선박이 항해하는 선박교통관제구역의 지형·조류, 해상기상 등 자연적 조건

②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선박운항자에 대한 교육·훈련은 「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」에 따른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 위탁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선박교통관제구역에서 공사·작업·조사 등에 종사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운항자로 하여금 공사·작업·조사 해역을 관할하는 선박교통관제관서를 방문하여 법 제5조제1항에서 정하는 교육·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.

제3조(선박교통관제 기본계획) 해양경찰청장이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

다른 공공기관의 장, 그 밖의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, 의견의 진술을 요청한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장이 요청한 해의 10월 31일까지 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.

제4조(선박교통관제 시행계획)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선박교통관제 시행계획(이하 “시행계획”이라 한다)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선박교통관제 운영에 관한 사항
2. 선박교통관제를 위한 시설의 구축 및 유지·관리에 관한 사항
3. 선박교통관제사의 교육·훈련에 관한 사항
4. 선박교통관제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
5. 기본계획에 대한 수정·보완의 필요성을 검토한 사항
6. 그 밖에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사항으로서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5조(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공표)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관보에 고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.

제6조(선박교통관제구역의 설정 기준)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은 「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을 포함하는 수역과 「해사안전법」 제10조에 따른 교통안전특정해역 및 「연안관리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연안해역 중 관제시설이 설치된 수역에서 유효한 레이더 탐지범위

내의 해상교통량 및 이동경로 등을 고려하여 선박교통관제구역을 설정하거나 변경하여 고시하여야 한다.

② 해양경찰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,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또는 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의 점용·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법 제21조에서 정하는 관제시설을 갖추고 선박 안전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역을 선박교통관제구역에서 제외할 수 있다.

③ 해양경찰청장은 효율적인 선박교통관제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박교통관제구역을 나누어 선박교통관제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.

1. 선박교통관제구역의 면적 및 해상교통량
2. 선박교통관제사와 선박 간 교신량
3. 선박교통관제구역 내 좁은 수로의 폭과 길이 등과 같은 지리적·환경적 요건

제7조(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의 고시) 해양경찰청장이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선박교통관제 시행에 관한 규정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.

1. 선박교통관제구역의 지형·조류, 해상기상 등 그 밖에 자연적 조건

2. 해상교통량

3. 선박운항통제의 필요성

4. 그 밖에 해상교통 및 선박의 항행안전을 위하여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8조(관제대상선박의 신고절차) ①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관제대상 선박의 선장은 선박교통관제구역을 출입하거나 선박교통관제구역 내에서 이동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무선설비를 이용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다음 각 호에 대한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. 단, 제2호가목에 따른 출항 예정 시간, 제3호가목에 따른 이동 예정 시간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1. 입항 신고

가. 입항 예정 시간, 입항 시간 및 입항 장소

나.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지점의 통과 시간

2. 출항 신고

가. 출항 예정 시간, 출항 시간, 출항 장소 및 목적지

나.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지점의 통과 시간

3. 이동[지정된 정박지 또는 안벽(岸壁)·물양장(物揚場)·잔교(棧橋)·부잔교(浮棧橋)·돌핀·선착장·램프(ramp) 등 계류시설(繫留施設)에서 다른 정박지 또는 계류시설로 이동하는 경우를 말한다. 이하 같다] 신고

가. 이동 예정 장소, 이동 예정 시간, 이동시간 및 목적지

나. 이동 완료 시간 및 이동 완료 장소

②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도선사가 도선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도선구(導船區)에서 도선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양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1. 도선구간의 승선·하선 시간
2.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지점의 통과 시간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할 선박교통관제구역별 선박의 신고방법 및 도선사 승선·하선 신고방법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.

제9조(관제통신의 제원) ①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선박교통관제구역별 관제통신의 제원(諸元)의 명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호출부호
2. 관제통신시설
3. 조난·긴급·비상 통신용 채널
4. 관제통신용 채널
5. 운용시간

② 제1항에 따른 선박교통관제구역별 관제통신의 제원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.

제10조(관제통신 녹음 등)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관제통신을 녹음하여 보존하여야 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

는 관제대상선박 중 대한민국 선박[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(裸傭船)을 포함한다]을 말한다.

1. 「선박안전법」 제2조제10호에 따른 여객선 중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여객선
2.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3천톤 이상의 선박
3. 「해운법」 제4조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선박 중 국내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300톤 이상의 여객선

② 선박교통관제관서와 제1항에 따른 선박(이하 이 조에서 “선박교통관제관서 등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제통신을 녹음하여야 한다.

1. 초단파 무선전화를 사용하는 관제통신
2. 선교(船橋)에서 발생하는 관제통신

③ 선박교통관제관서 등은 관제통신을 녹음하려는 경우 전자적 수단을 이용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 수기(手記)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.

1. 초단파 무선전화의 통신 특성 등으로 인하여 혼신(混信)이 발생한 경우
2. 통화량 급증 등으로 인하여 제9조에 따른 관제통신 제원으로 통신하지 아니한 경우
3. 관제시설의 일시적인 고장 등으로 관제통신 녹음이 불가능한 경우

④ 제2항에 따라 관제통신을 녹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가 함께 저장되어야 한다. 다만, 전자적 수단으로 저장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 수기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.

1. 날짜 및 시간

2. 관제통신 채널, 전원 켜짐·꺼짐 상태 및 음량상태 등 초단파 무선전화의 작동상태 정보

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정보의 보존기간은 60일로 한다. 다만, 해양사고 조사 등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제통신 녹음 및 보존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.

제11조(선박교통관제사의 교육 및 평가) ①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선박교통관제사 교육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선박교통관제사 기본교육

2. 선임선박교통관제사 교육

3. 현장직무교육 강사 교육

4. 현장직무 교육

5. 선박교통관제사 보수 교육

6.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교육

② 제1항에 따른 선박교통관제사 교육 및 평가와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12조(기술개발의 지원)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술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그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1. 관제시설의 장비 기술
2. 관제시설의 응용 기술
3. 그 밖에 관제시설의 발전을 위하여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

제13조(한국선박교통관제협회) 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한국선박교통관제협회(이하 “협회”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정관을 정하여야 한다.

1. 목적
2. 명칭
3.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
4. 자산에 관한 사항
5.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
6. 이사회의 운영
7. 사업의 범위·내용 및 그 집행
8. 회계
9. 공고의 방법
10. 정관의 변경
11. 조직에 관한 사항

12. 그 밖에 협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

- ② 협회의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
- ③ 해양경찰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협회에 대하여 해양경찰청장 등의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,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양경찰청장 등의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.
- ④ 해양경찰청장은 협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허가·대부하거나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.
- ⑤ 제4항에 따른 사용허가 또는 대부의 내용, 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.

제13조(한국선박교통관제협회) 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한국선박교통관제협회(이하 “협회”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정관을 정하여야 한다.

- 1. 목적
- 2. 명칭
- 3.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
- 4. 자산에 관한 사항
- 5.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
- 6. 이사회의 운영
- 7. 사업의 범위·내용 및 그 집행

8. 회계

9. 공고의 방법

10. 정관의 변경

11. 조직에 관한 사항

12. 그 밖에 협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

② 협회의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

③ 해양경찰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협회에 대하여 해양경찰청장 등의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,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양경찰청장 등의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.

④ 해양경찰청장은 협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허가·대부하거나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.

⑤ 제4항에 따른 사용허가 또는 대부의 내용, 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.

제14조(권한의 위임·위탁) ①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선박교통관제의 시행 권한을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한다.

②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·징수 권한을 해양경찰서장에게 위임한다.

③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

부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받을 기관의 명칭, 주소, 대표자, 위탁할 업무의 내용과 처리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고시하여야 한다.

제15조(과태료의 부과 등) 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.

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) ①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「해사안전법 시행령」의 별표 5 및 「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2에 따른다.

② 이 영 시행 전에 「해사안전법」 제36조제4항 내지 제6항 및 「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」 제22조를 위반하여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이 영 별표 1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.

제3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해사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5의 2. 개별기준 표의 거목, 너목, 더목, 러목에 해당하는 위반

행위, 근거 법조문, 과태료 금액을 삭제한다.

②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2의 2. 개별 기준 표의 너목, 더목에 해당하는 위반행위, 근거 법조문, 과태료를 삭제한다.

과태료의 부과기준(제15조 관련)

1. 일반기준

- 가. 하나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금액이 큰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한다.
- 나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.
- 다.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(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)의 다음 차수로 한다.
- 라.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. 다만,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1) 위반행위자가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」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 - 2)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 - 3) 위반행위자의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
 - 4)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2. 개별기준

(단위: 만원)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 금액		
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이 상 위반
가.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	법 제27조 제1항제1호	90	150	300
나. 법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무	법 제27조			

선설비를 갖추지 아니하거나 관제통신을 청취·응답하지 아니한 경우	제1항제2호			
1) 무선설비를 갖추지 않은 경우			300	
2) 호출응답용 관제통신을 청취·응답하지 않은 경우		90	150	300
다.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	법 제27조 제2항	60	100	200
라. 법 제14조제6항에 따른 관제대상선박의 신고 절차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	법 제27조 제1항제3호	90	150	300
마. 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관제통신을 녹음하여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	법 제27조 제1항제4호	90	150	300